

편집위원회 운영규정

2023. 4. 14. 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

본 규정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(이하 '재단')의 학술지 「동광」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장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

제2조(구성)

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.

제3조(자격 및 임명)

1. 편집위원장은 사회복지 관련 박사학위 이상의 전공자로서 대학 정교수 또는 연구기관 연구위원 이상인 자로 재단 아동복지연구소(이하 '연구소') 소장의 추천으로 재단 회장이 임명한다.
2. 연구소 소장은 당연직으로 편집위원이 된다.
3. 그 밖의 편집위원은 사회복지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 교수 또는 연구원 이상인 자 중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.

제4조(임기)

1.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2. 편집위원이 결원일 때는 편집위원장은 그 후임자를 지체없이 위촉하여야 하고, 그 임기는 그때부터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역할)

1.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주관하고,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한다.
2.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.

- 1) 재단이 발간하는 학술지 「동광」의 체제, 발간 횟수, 분량, 논문심사의 기준과 절차 및 투고 규정 제정
- 2) 논문 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의뢰
- 3) 학술지 원고접수
- 4) 심사 결과를 참조하여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 의결
- 5) 게재 논문의 질 제고
- 6) 학술지 편집과 발간에 관련된 사항
- 7) 연구윤리 관련 사항
- 8) 심사결과와 관련한 이의제기 등 기타 사안에 대한 심의
- 9) 기타 학술지 발간과 관련된 제반사항

제6조(회의 및 의결)

1. 편집위원회의 학회지 접수 및 마감 일정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소집하여 의결하고 조정한다.
2. 편집위원은 필요한 경우 편집회의의 소집을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3. 편집위원회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,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.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4. 편집위원회는 의사결정을 위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3장 기타

제8조(기타)

1.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편집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.
2.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심사 관련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.